

서울특별시 집합건물 건전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

- 존경하는 민병주 위원장님!
그리고 주택공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!
국민의힘 동작구 제1선거구 이봉준 의원입니다.
- 본 의원이 발의한 「서울특별시 집합건물 건전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.
- 전유부분이 50개 이상인 건물의 관리인에게 법에 규정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명할 경우, 명령의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「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이 올해 3월 28일 개정되어 9월 29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.
- 이에, 전유부분이 50개 이상인 건물의 관리인에게 보고 및 자료 제출을 명령할 경우에는 그 내용과 기간을 명시한 문서로 하도록 조례에 규정하고자 개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.
-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, 말씀드린 제안 취지를 바탕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.
-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